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28호 2019. 12. 11.(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19-141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제2019-1519호 제2차 거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공람공고 4

제2019-1533호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5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30호 거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공고 ... 20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11.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28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12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149-126	2009-04-01	2019-12-11	참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28	2009-04-01	2019-12-11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아홉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7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296	2009-04-01	2019-12-11	대추나무가 호수처럼 울창한데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4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둔기길 54	2009-04-01	2019-12-11	신라와 백제가 싸울 때 군사가 진을 쳤던 곳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44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창마1길 125-78	2009-04-01	2019-12-11	고려 때부터 가소현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제2차 거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공람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제2차 거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조의 5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거창군수

1. 공람목적 : 제2차 거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승인내용 일반인 열람
2. 거창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가. 계획의 범위 : 거창군 전역(A=803.17km²)
 - 나. 주요내용
 - 자연재해 관련 일반현황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3. 관계도서 : 게재 생략하며 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2019. 12. 6 ~ 2020. 1. 6(32일간)
5. 공람장소 :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안전총괄과(☎940-3652)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정심사기준 정립
3. 주요내용
 - 가. 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심사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안 제3조 ~ 제11조)
 - 라. 수당 등의 지급(안 제12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11. ~ 2019. 12. 24. / 14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담당부서 :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 전 화 : 055-940-3124
- 팩 스 : 055-940-373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 ☎ 940-3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거창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거창군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창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거창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
4. 거창군 수급자 대표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별표 1」

거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20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 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p> </div>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예시) ></p> <p>△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5점</p> </div>		15
	<input type="checkbox"/>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1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총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15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20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 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15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 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지자체별 심사 기준			
거창군 심사항목 가점부여사항	생활시설, 주·야간, 단기보호 (10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층 시설로 운영(생활시설 및 주야간·단기보호 시설 해당) (5점) <input type="checkbox"/> 시설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전문직(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고용 (5점)	
	방문목욕 (5점)	<input type="checkbox"/> 목욕차량 구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9.12.12.)**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이 지정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는 조치
3. 그 밖에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철회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중 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생 략)

관련 부칙

제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전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았거나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부터 기산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9.12.12.)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 중 인력현황의 변경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6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관련 부칙

제4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거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공고

거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9.

거창군수 (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신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비고
기간제근로자	수영강사	1명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거창국민체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영 강습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프로그램 발굴 등 	

2.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 9개월 이내
 - ※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 응시자격(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2급, 수상구조사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중 1개의 자격증소지자는 응시 및 채용은 가능하나, 채용 후 2년 이내 응시자격(2개자격증 충족)을 충족 못할 시 재계약 불가.
- 급여
 - 기본급 : 일급 76,800원×근무일수
 - 각종 수당 : 주차, 월차, 연차, 휴일근로수당, 강사수당, 안전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외부특강 수당 등
 - ※ 연봉 : 44,000천원 정도(외부 특강 수업 별도)

○ 근무내용

근무 요일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비 고
화요일 ~ 금요일	수영강습 (안전근무 포함)	- 오전 06:00 ~ 15:00 - 오후 13:00 ~ 22:00	- 4개월마다 근무조 변경 근무
토요일 ~ 일요일	당직근무 (안전근무 포함)	"	- 토,일 근무 시 근무조 편성 후 순번대로 근무 실시 (월 4회 정도 근무)

※ 매주 월요일 휴관(휴무)

-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장소 :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과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u>모두 소지(예정)자</u>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요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해양경찰청장 지정 수상레저 기관(단체) 현황>		
대한적십자사	(재)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대한안전연합
(사)수상인명구조단		

- 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3) 성 별 : 남녀 구분 없음(단, 남자의 경우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4) 거 주 지 : 제한 없음

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1조(결격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자 우대사항

- 공공기관 수영강사 근무 경력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9. 12. 9. ~ 12. 18.	2019. 12. 17. ~ 12. 18.	2019. 12. 19.(목)	2019. 12. 20.(금) 14:00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2019. 12. 23.(월)

가. 접수처 : 거창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및 근무개시일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참조

–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 4.5cm)】 부착

나. 자기소개서 ----- 1부

다.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A4용지 소정 양식)----- 1부

라.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 수영강사 경력이 있는 자는 필히 제출 요함. 미제출 시 수영강사 경력 불인정함.

–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기관 관인 또는 직인이 있어야 함.

마. 자격증 발급 확인서 ----- 각1부

- 필수 제출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인명구조관련 자격증

- 선택 제출 : 기타 자격증

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 1통

마.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 한 해 인정함.

7. 기타사항

-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담당(☎055 - 940 - 8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주소				전화 :				
				HP :				
학 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가 족 사 랑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자 격 면 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 요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귀 군의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인 (인) 거 창 군 수 귀하								

응 시 표	성 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cm×4cm)
		한자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 ② 응시분야 :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기재
- ③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④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⑤ 성 명 : 정자로 기재
- ⑥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 력 서

사 진 (3cm x 4cm)	성	한 글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집 : ()		휴대전화 :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분 야			
	~		고등학교(졸·중퇴)					
	~		대 학교(졸·중퇴)		전공			
~		대 학 원(졸·중퇴)		전공				
경 력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							
	~							
	~							
	~							
	~							
자 격 및 면 허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시 행 처			
	년 월 일							
병 역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미 필 또는 면 제 사유		
	~							
신 장	cm	체 중	kg	취 미	특 기		종 교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령	직 업	근 무 처	직 위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①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채용등급	채용분야
	. . (세)	기간제근로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2019. . .

작성자 : (서명·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또한,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